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5.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3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유가족 사망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도 유가족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는 조례제정 이후 생존해 계시다 돌아가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현 조례를 개정하여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기준 시점을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희생·공헌자의 유가족으로 정한 것은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되고 향후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지며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인 유가족의 범위와 적용시점 등을 구체화 하는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53	관 련 호
----------	-----	----------

제안년월일 : 2013. 11.

제 출 자 : 오현숙 위원 외 1명

1. 수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은 제1항의 단서 조항과 같다. 다만, 제1항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희생공헌자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u>제10조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유가족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은 제1항의 단서조항과 같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희생·공헌자의 유가족부터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u>제10조 ②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은 제1항의 단서조항과 같다. 다만, 제1항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희생·공헌자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53 호
----------	---------

제출연월일 : 2013.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망 위로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 희생·공헌자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유가족 사망 시 1회에 한정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10.10~10.30, 20일간)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급기준일”을 “지급기준일(사망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유가족 사망 시 1회에 한정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은 제1항의 단서조항과 같다.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

④ 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가족의 범위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희생·공헌자의 유가족부터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u>지급기준일</u>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u>자로</u> 한다.</p> <p><u>〈신설〉</u></p> <p>② ~ ③ (생략)</p> <p>④ <u>사망위로금</u> 지급이 가능한 유가족의 범위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 ----- ----- ----- ----- ---<u>지급기준일(사망일)</u>----- ----- <u>사람으로</u> ----- -.</p> <p>② <u>제1항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유가족 사망 시 1회에 한정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은 제1항의 단서조항과 같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로금</u> ----- ----- ----- -----.</p>